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Guidance for Emergency Exit Marking in Korean
Character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 예규 제315호

항공안전법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 차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Guidance for Emergency Exit Marking in Korean Character)	
---	--

제1조 목 적	1
제2조 적 용	1
제3조 표 시	1
제4조 글자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	1
제5조 지침의 준용	1
제6조 부 칙	1
제7조 유효기간	2
부 칙	2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Guidance for emergency exit marking in Korean character)

제정 2006.01.23(항공안전본부 예규 제29호)

제정 2009.06.02(국토해양부 예규 제75호)

재발령 2012.05.31(국토해양부 예규 제231호)

재발령 2015.05.12(국토교통부 예규 제100호)

개정 2018.05.28(국토교통부 예규 제231호)

개정 2021.05.31(국토교통부 예규 제315호)

개정 2024.05.24(국토교통부 예규 제392호)

제1조 목 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Application)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이에 속한 승객정원 10인 이상의 비행기에 적용한다. 단, 스케줄이 공공에 공지되지 않은 부정기로 운항하거나 자가용 비행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표 시(Marking) ①표시는 탑승객이 항공기의 주 객실통로를 따라서 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비상구 EXIT”로 나타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한글은 표시위치에 따라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왼쪽, 위아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글자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Letter high to stroke width ratio) 표시는 고딕체로서 한글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을 6:1 내지 10:1로 하고, 한글의 높이와 폭은 표시면적이 허용하는 범위를 따른다.

제5조 지침의 준용(Apply to this guidance for other marking) 항공기 객실내부의 그 밖의 한글표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부 칙(Additional Rule) ①이 지침은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지침 시행 전에 표시된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항공기기술표준을 따른다.

제7조 (유효기간 (Validity Period))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정 2006.01.23)

(시행일)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정 2009.06.02)

-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예규의 폐지)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항공안전본부 예규 제 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